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 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초과생산된 미곡에 대한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논의¹⁾된 바 있는데,

1) (의안번호 2119727) 본회의 가결(2023. 3. 23.)→재의 요구(2023. 4. 4.)→재의 부결(2023. 4. 13.)
(의안번호 21267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결(2024. 2. 1.)→법사위 회부 이후 임기만료 폐기

동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① 쌀값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하여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고 ②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① 시장격리 의무화는 벼 재배 유인을 증가시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심화 및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② 벼 및 타작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음²⁾.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6조의 미곡 매입대책 시행 관련, 이는 사실상의 의무매입제로서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이 여전하고, 위원회를 통한 기준설정 시 갈등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쌀 매입 시 가격도 시장가격과 관련 없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어 시장왜곡이 발생한다는 점,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수급계획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안 제3조)은 민간 유통도 포함하여 실제 관리가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한 바, 수급정책의 탄력적·실효적 운용을 위해 정부관리양곡을 대상으로 용도 및 재고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³⁾를 통해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의안번호 212258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p.42 참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쌀 의무 매입시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시장 자율수급 등 국제 통상원칙에 위배되며, 가격변동성이 큰 타작물로 유사요구 과급이 우려된다는 점,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투자 축소 및 장기적 쌀 가격 하락 전망 등으로 농민 소득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⁴⁾, 연례적 시장격리로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⁵⁾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전문위원 김 성 완)

4)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 효과 분석('22.12월): ('23p) 45,157→('30p) 43,177원/20kg

5) '양곡관리법 개정안(시장격리의무화) 효과분석'('2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